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47

발의연월일: 2025. 2. 13.

발 의 자: 손명수·문금주·김성환

문정복 · 김영배 · 남인순

이연희 · 김원이 · 민형배

박용갑・염태영・정태호

윤종군 • 한민수 • 김영진

김태년 · 송기헌 의원

(179])

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협약」(우리나라는 1952.12.11에 가입)은 국제민간항 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비행에 관한 기준·절차·방 식에 관한 사항을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 정하고 공해상(公海上)에서는 이를 차이점 없이 반드시 지킬 것을 명시함.

우리나라도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하는 비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항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범위가 영토·영해·영공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그 대상을 자연인에서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공해상에서의 같은 협약준수 의무를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비행규칙의 적용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기관·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공해상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 약 부속서의 준수 의무를 명시(안 제67조제1항·제3항) 법률 제 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호의3라목 중 "사람이"를 "자가"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사람은"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른 기준·절차·방식 등에 관한 사항이 비행규칙과 다른 경우 공해상(公海上)에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4의2. (생 략)	1. ~ 24의2. (현행과 같음)		
24의3. "항공교통데이터"란 항	24의3		
공교통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u>.</u>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6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라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u>사람</u>	<u>자가</u>		
<u>이</u>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비행계획 및 이와 관련된			
자료			
마. ~ 카. (생 략)	마. ~ 카. (현행과 같음)		
25. ~ 34. (생 략)	25. ~ 34. (현행과 같음)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 ① 항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 ①		
공기를 운항하려는 <u>사람은</u> 「국	<u>자는</u>		
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			
절차·방식 등(이하"비행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		

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른 기준·절차·방 식 등에 관한 사항이 비행규칙 과 다른 경우 공해상(公海上)에 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 하여야 한다.